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하루가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행복.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302호 2022. 3. 21.(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1호(2022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5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15호(사도개설(변경) 허가 고시) 20

회 람							
--------	--	--	--	--	--	--	--

2022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기 간 :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연수구 세무1과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세무과)·군(재무과)

의견제출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 세무1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http://etax.incheon.go.kr)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인터넷 접수 가능)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수 또는 의견제출서를 한
국부동산원 인천지사(T.032-437-6771~5, FAX.032-437-6779)에 우
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2022. 3. 17.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알기 쉽고 분명한 국어사용으로 구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언어생활의 모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국어 발전 시행계획
 -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함.
 -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국어사용 환경 개선, 국어 문화유산 보전,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공문서, 공공기관, 광고물 등 언어 사용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 외국어·신조어 및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 공공기관 명칭 및 광고 등 한글 표시
 -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등을 정하거나 광고물,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명시(안 제8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등 국어 발전과 보전위한 업무 총괄
- 의견 청취 및 예산·포상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 구민 의견 청취
 -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민 의견 청취할 수 있음.
 - 교육
 -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 포함 구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포상
 -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등에 이바지한 구민,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749-7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393, FAX 749-7399
- E- mail : abc405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보건소,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

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채용서류 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공정한 채용절차 정립
- 기타 용어정비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3. 주요내용

- 채용 전형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삭제(제9조)
- 채용 구비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 결과서’로 개정(제10조)
- 해당 직무 특성 상 부득이 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 근무부서 비용 부담 조항 신설(제10조3항)
- 기타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 제40조, 제11장)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032-749-7192), 팩스(032-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안) : 붙임

[붙임 1]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서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채용신체검사서”를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부서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장 제목 “기타”를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1. ~ 6. (생략)

7. 기타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신설>

제12조(재정보증) 근무부서의 장은 공무원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제25조(출장) ① (생략)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드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특별휴가) 공무원근로자의 특별휴가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②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

③ 공무원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부서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재정보증)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

제25조(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28조(특별휴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33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②

(생략)

③ 근무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직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 2. (생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금품
제11장 기타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제40조(공제)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11장 보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 관련 규정 정비
 - 제10조(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에 명시된 채용신체검사서 단어 삭제
 - 제12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명시된 채용신체검사서를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수정, 부득이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 근무부

- 서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 신설
- 자구 및 근거법령 명 수정 (제2조, 제10조 등)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032-749-7194), 팩스(032-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안) : 붙임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로 한다.”를 “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서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채용신체검사서”를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부서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기획예산실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로 <u>한다</u>.</p> <p>5. ~ 7. (생략)</p> <p>제10조(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근무부서의 장은 「<u>개인정보보호법</u>」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p> <p>② 근무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개인정보보호법</u>」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받는 서류를 통한 주민등록번호</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를 말 <u>한다</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 「<u>개인정보 보호법</u>」 ----- -----.</p> <p>② ----- ----- ----- 「<u>개인정보 보호법</u>」 ----- ----- -----</p>

호 수집해서는 안 된다.

- 1. ~ 2. (생략)
-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 ③ (생략)
- ④ 채용전형이 종료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한다.

제12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① (생략)
- 1. ~ 4. (생략)
- 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 <신설>

- ②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 3. -----
----- 서류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2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①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부서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사도개설(변경) 허가 고시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변경) 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3.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사도개설(변경) 허가 내용]

허가번호	제2020-01호
사도개설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위 치	송도동 89도(시점), 송도동 69-4도(종점)
목 적	진출입로 확보
면 적	A= 6,916.1㎡
도로규모	L=349.17m, B=20.0m,
공사기간	[당 초] 2021. 3. 31. ~ 2022. 2. 28. [변 경] 2021. 3. 31. ~ 2022. 3. 31.